

의안번호	2210633
의 퇴 인	이정헌의원
회 답 일	2025. 7. 10.
추계번호	25B3021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(전문인력의 확보) 제1항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·활용 2.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.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. 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.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.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을 위한 사업 ※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·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(전문인력의 확보) 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서 규정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·지원 사업 중 다음의 사업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예산사업이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의 확대나 사업 방식의 변경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향후 예산 규모의 변동을 추계할 수 없음

사업 내용	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		
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·활용 (안 제21조제1항제1호)	(단위: 백만원)		
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(2133-304) (교육훈련) (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)	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R&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·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AI 특화교육과정 운영, 산학협력 강화, 대학원 교류 확대 등	30,000
	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(2232-302)	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	13,500
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(안 제21조제1항제2호)	지역디지털 인재양성 (2232-303) (ICT이노베이션 스퀘어조성)	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·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·개발·테스트·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·AI 전문 인력 양성	31,382
	생성AI선도 인재양성 (2232-314)	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 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 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	8,700
	AI스타펠로우십 지원 (2232-316)	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·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(Global Top-Tier) 수준의 AI인재 양성	9,000
	디지털전문·융합 인재양성 (2232-325) (이노베이션 아카데미)	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(AI 관련 인재 포함)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·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	10,059
	디지털전문·융합 인재양성 (2232-325) (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)	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,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·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	6,780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

사업 내용	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		
전문인력의 국내외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(안 제21조제1항제4호)	(단위: 백만원)		
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(2133-304) (교육훈련) (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)	디지털 혁신기술 분야(AI 등) 해외 최 고 수준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우수 대 학원생 대상 글로벌 파견교육 과정 개 설 운영	6,107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

- 개정안에서 규정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·지원
사업 중 다음의 사업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
은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사업 내용	미첨부 사유
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 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(안 제21조제1항제3호)	- 개정안에 따라 ‘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,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, 그 밖에 인공 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·지원을 위한 사업’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 으로 예측할 수 없음
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 우 증진 등 복지 향상 (안 제21조제1항제5호)	
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·지 원을 위한 사업 (안 제21조제1항제6호)	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